

政策報告書 96-02

障礙人 實態調查 結果와
政策課題

鄭基源

權善進

鄭宇鎮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目 次

目的 및 要約	5
I. 障碍人 實態調査 概要	6
II. 基本視角	7
III. 障碍人 實態調査 結果 및 政策課題	8
1. 障碍人口 및 出現率	8
2. 障碍人 出現率의 國際比較	9
3. 在家障碍人의 發生原因과 治療	10
4. 在家障碍人의 年齡別 및 地域別 推移	11
5. 障碍人 家口數 및 所得	11
6. 在家障碍人의 補裝具 所持現況	11
7. 在家障碍人의 日常活動	12
8. 在家障碍人의 就業 및 經濟狀態	13
9. 在家障碍人의 福祉서비스	14
IV. 建議 및 向後 政策方向	15
1. 障碍發生 豫防과 醫療再活의 強化	15

2. 障碍人の 職業再活을 통한 所得保障	17
3. 家族支援 福祉서비스의 擴大와 社會環境의 改善	18
參考文獻	19

表 目 次

<表 1> 障碍人口의 變化	7
<表 2> 1995年度 全國 障碍人 推定數	8
<表 3> 障碍類型別 分布	9
<表 4> 障碍人 出現率의 國際比較	9
<表 5> 障碍類型別 發生原因	10
<表 6> 障碍人の 外部活動時 不便事項	12
<表 7> 職業訓練 관련 希望事項	13
<表 8> 障碍人の 希望하는 福祉서비스	14

障 碍 人 實 態 調 査 結 果 와 政 策 課 題

〈 目 的 〉

1995年度 障 碍 人 實 態 調 査 結 果 和 我 國 障 碍 人 是 約 1,053 千 名 (全 人 口 的 2.35%) 推 定 的 是 吧 , 調 査 中 出 現 的 障 碍 人 的 生 活 實 態 及 福 祉 欲 求 是 以 障 碍 人 政 策 的 懸 案 課 題 及 政 策 方 案 的 提 示 碼 字 合 。

〈 要 約 〉

〈 基 本 方 向 〉

障 碍 的 豫 防 及 醫 療 再 活 事 業 的 强 化 和 職 業 再 活 通 過 障 碍 人 的 雇 傭 機 會 及 社 會 參 與 的 扩 大 而 且 , 障 碍 人 家 族 的 支 援 是 以 政 策 的 重 點 之 一 。

〈 推 進 方 案 〉

- 障 碍 發 生 豫 防 的 爲 了 保 健 所 中 遺 傳 上 咨 詢 診 察 室 的 設 立 而 且 , 新 生 兒 的 先 天 性 代 謝 異 常 檢 查 的 義 務 化 。
- 『應 急 災 難 診 療 隊 (加 緊)』 的 設 立 及 運 營 通 過 障 碍 發 生 的 最 小 化 。
- 登 錄 障 碍 人 的 醫 療 保 險 料 的 50% 及 障 碍 及 有 關 的 診 療 費 中 本 人 負 擔 的 50% 的 減 免 。
- 長 期 的 是 以 家 族 能 夠 照 顧 障 碍 人 的 條 件 爲 前 提 而 且 爲 了 確 保 此 種 條 件 的 實 現 而 且 『障 碍 人 保 護 手 當 制 度 (加 緊)』 的 引 入 。
- 最 低 賃 金 的 60% 水 準 的 義 務 雇 傭 負 擔 金 的 最 低 限 額 水 準 以 上 的 上 限 制 。
- 『更 加 充 實 的 地 域 社 會 的 建 立 運 動 (加 緊)』 的 展 開 而 且 障 碍 人 的 社 會 參 與 的 保 障 的 地 域 社 會 共 同 體 的 建 立 。

I. 障礙人 實態調查 概要

-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서는 「1995년도 障礙人 實態調查」를 실시하였음.
- 調查根據: 障礙人福祉法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調查를 실시함 (1980, 1985, 1990, 1995).
- 調查目的: 全國 障礙人口數의 推定, 在家障礙人의 生活實態 및 福祉서비스에 대한 欲求 把握
- 調查規模: 전국 39,078가구의 130,556명
- 調查期間: 1995. 3. 10. ~ 5. 31.(약 3개월)
- 調查內容: 障礙類型(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障礙特性 (장애원인 및 발생시기), 健康狀態, 日常生活, 教育, 經濟活動, 生活環境, 福祉欲求 등
- 施設調查: 在家障礙人 調查와 함께 全國의 748개 社會福祉施設에 대해 施設收容 障礙人 數 파악을 위한 全數調查 (郵便調查)를 실시함.

II. 基本視角

- 老齡障礙人的 발생과 交通事故 및 産業災害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障礙人口는 꾸준히 增加하고 있음.

〈表 1〉 障礙人口의 變化

(單位: 千名)

年 度	1985	1990	1995
障礙人數	915	956	1,053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各年度 障礙人 實態調查 結果

- 障礙發生의 대부분이 後天的 原因에 기인하고 있으며, 障礙人的 福祉欲求는 增加하고 있음.
 - 障礙人的 88%가 疾病, 각종 事故 및 災害 등의 後天的 原因에 의하여 발생하였음.
 - 障礙人은 醫療再活, 所得保障, 社會參與에 관한 福祉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向後 障礙人政策은:
 - 障礙의 豫防과 醫療再活 事業을 強化하고,
 - 所得能力이 없는 障礙人的 生計를 保障하며,
 - 職業再活을 통해 雇傭機會를 擴大하고,
 - 障礙人 家族을 支援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임.

Ⅲ. 障礙人 實態調查 結果 및 政策課題

1. 障礙人口 및 出現率

- 全國의 障礙人은 1,053천명으로 추정되어, 1990년 實態調查의 결과에 비해서 97천명이 늘어났음.
 - 障礙人 出現率(人口 100名당 障礙人數)은 2.35%로 1990년에 비해 0.13% 포인트 증가하였음.
 - 老齡障礙人의 증가, 交通事故 및 기타 災難 등으로 인해 障礙人口가 증가하고 있음.
 - 在家障礙人은 1,029천명이며, 施設에 수용된 障礙人은 24천명임.

〈表 2〉 1995年度 全國 障礙人 推定數

(單位: 千名)

區 分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障礙人數	1,029	24	1,053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礙人 實態調查

- 障礙類型別로는 肢體障礙人이 614천명(58.3%)으로 가장 많으며, 두 가지 이상의 障礙를 함께 지닌 重複障礙人은 205천명(19.5%)임.

〈表 3〉 障礙類型別 分布

(單位: 千名, %)

障礙類型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중복	계
障礙人數	614	58	113	23	40	205	1,053
比 率	58.3	5.5	10.7	2.2	3.8	19.5	100.0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礙人 實態調查

2. 障礙人 出現率의 國際比較

- 우리나라의 障礙人 出現率은 外國에 비해 낮은 바, 이는 高齡人口 比率의 차이(65세 이상: 호주 11.7%, 한국 5.5%) 외에 障礙의 範圍를 매우 좁게 定義하기 때문임.

〈表 4〉 障礙人 出現率의 國際比較

(單位: %)

國 家	호 주 (1987)	독 일 (1991)	일 본 (1991)	한 국 (1995)
障礙人 出現率	15.6	8.4	3.5	2.35

資料: U.N., *Disability Statistics Database*, 1992.

厚生省, 厚生白書, 1995.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년도 障礙人 實態調查

- 우리나라는 장애를 身體機能의 喪失 또는 損傷 중에서 肢體, 視覺, 聽覺, 言語障礙 및 精神遲滯에 한정하고 있으나,
- 日本은 內部 腸器의 障礙(호흡기, 심장,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 기능 등; 1991년 458천명)도 法定 障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호주에서는 身體的 · 知的 · 心理的 · 精神的 · 感覺的 · 神經的 損傷으로 일상생활의 活動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모두 障礙人으로 간주하고 있음(예: 醜形, 畸形, AIDS 환자 등).

3. 在家障礙人の 發生原因과 治療

- 障礙의 發生은 精神遲滯를 제외하고 대부분 豫防이 가능한 각종 疾患 및 事故 등 後天的 原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肢體障礙의 96%, 視覺障礙의 89%, 聽覺障礙의 86%가 後天的 原因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 특히 肢體障礙의 경우 뇌졸중 등 각종 疾患(53%)을 비롯하여, 交通事故(11%)나 産業災害(8%), 기타 事故 및 戰傷(20%)등에 의해 장애가 발생되었음.

〈表 5〉 障礙類型別 發生原因

(單位: %)

障礙 原因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계
선천적 원인	1.0	3.8	3.4	11.4	24.2	3.4
출생시 원인	1.1	0.6	1.3	1.1	13.2	1.9
후천적 원인	95.7	89.2	85.6	51.6	32.8	88.1
원인을 모름	2.2	6.4	9.7	35.9	29.8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礙人 實態調査

- 전체 障碍人 중 35%는 障碍治療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理由는 經濟的으로 어려워서(38%), 또는 障碍狀態에 대한 無知(24%) 등이었음.

4. 在 家 障 碍 人 의 年 齡 別 及 地 域 別 推 移

- 年 齡이 높을수록 障碍人口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障碍人의 44%가 60세 이상임(日本의 경우 60세 이상이 63%).
 - 人口老齡化에 의한 障碍人數는 더욱 增加할 것으로 展望되며,
 - 都·農間 老人人口 比率의 격차 등으로 郡部의 障碍人 出現率(4.6%)이 大都市(1.8%) 및 其他都市(1.7%) 보다 높음.

5. 障 碍 人 家 口 數 及 所 得

- 障碍人이 있는 家口는 953천 家口로 우리나라 전체 家口의 약 7.5%로 추정됨.
- 障碍人 家口의 月 平均所得은 907천원으로, 都市勤勞者 家口當 月 平均所得(1995년 2/4분기 1,800천원)의 50%에 지나지 않음.

6. 在 家 障 碍 人 의 補 裝 具 所 持 現 況

- 調查結果 補裝具 구입에 대한 經濟的 支援과 보장구의 質的 改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필요한 補裝具를 소지하지 않은 障礙人은 21%로, 이들 중 56%가 經濟的인 理由로 補裝具를 구입하지 못하였음.
- 補裝具를 所持하고 있으면서도 活用하지 않는 障礙人은 30%였는데, 補裝具의 효과가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서 活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7. 在家 障礙人의 日常活動

- 많은 障礙人이 日常活動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4%), 특히 視覺(73%)과 肢體障礙(72%)의 경우가 심하였음.
 - 전체 障礙人의 약 41%가 日常活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家族(95%)이 장애인을 보호·수발하고 있음.
- 障礙人이 집밖의 活動에서 不便을 느끼는 要因은 交通手段 利用 불편, 동반자 없음, 便宜施設 미비의 순서로 나타남.

〈表 6〉 障礙人의 外部活動時 不便事項

(單位: %)

不便事項	교통수단 이용불편	동반자 없음	편의시설 미비	기 타
比 率	40.6	29.4	15.0	15.0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礙人 實態調査

8. 在家障碍人の 就業 및 經濟狀態

- 15세 이상 전체 障碍人の 32%가 就業하고 있으며, 就業障碍人は 주로 自營業(40%)에 종사하고 있음.
 - 就業은 주로 農業(31%) 및 單純 勞務(23%)에 치중되어 있으며,
 - 就業 障碍人の 月平均 勤勞所得은 683천원임(참고: 賃金勤勞者의 月平均 賃金 1995년 2/4분기 기준 1,074천원).
- 아직까지 障碍人の 職業訓練은 活性化되지 못해, 職業訓練을 履修한 경우는 전체 障碍人の 2%이며, 學生을 제외한 15~29세 까지의 障碍人 중에서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비율은 42%임.
 - 職業訓練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 희망하는 사항은 다양한 訓練職 種 개발, 訓練費 보조 등임.

<表 7> 職業訓練 관련 希望事項

(單位: %)

希望事項	훈련직종 다양화	훈련비 보조	훈련시설 장비확충	기 타
比 率	33.4	29.8	20.5	16.4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碍人 實態調查

- 전체 障碍人の 60% 정도가 經濟的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障碍人の 16%가 生活保護對象者이며, 國民年金, 報勳年金, 自動車保險 등의 給與를 받는 장애인은 11%임.

- 障碍人の 46%가 補裝具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인해 非障碍人에 비해서 月 平均 106천원의 生活費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9. 在家障碍人の 福祉서비스

- 障碍人 登錄率은 30%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日本(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障碍人の 47%가 장애인 登錄制度에 관해서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64%만이 障碍登錄을 하고 있음.
 - 未登錄 理由는 障碍에 대한 노출기피, 障碍人福祉 수준의 미흡, 登錄節次와 方法에 대한 무지 등으로, 登錄制度의 홍보, 登錄에 따른 惠澤의 확대, 登錄節次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障碍人이 國家나 社會로부터 바라는 복지서비스의 優先順位는 첫째, 醫療惠澤의 확대, 둘째, 生計保障, 셋째, 障碍人雇傭事業 강화 등으로 나타남.

〈表 8〉 障碍人の 希望하는 福祉서비스

(單位: %)

希望하는 福祉서비스	의료 혜택	생계 보장	고용 강화	주택 보장	시설 확충	교통 편의	기타
比 率	32.4	30.3	6.8	6.0	3.6	3.4	17.5

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5年度 障碍人 實態調査

IV. 建議 및 向後 政策方向

〈政策方向〉

첫째, 대부분의 障礙가 後天的 原因에 의하여 發生하는 것을 고려하여, 障礙의 豫防과 醫療再活 事業을 強化함으로써 障礙人福祉의 效率性을 기함.

둘째, 障礙人의 自立自活을 圖謀하기 위하여 職業再活을 통한 雇傭機會 擴充 및 社會參與 方案을 강구함.

셋째, 家族과 地域社會가 障礙人을 돌볼 수 있는 支援政策을 모색하고, 障礙人을 위한 便宜施設을 확충함.

1. 障礙發生 豫防과 醫療再活의 強化

가. 遺傳相談 클리닉의 設置 및 代謝異常檢査의 義務化

- 保健所에 遺傳相談 클리닉을 설치하여 先天的 原因에 의한 障礙兒 發生을 豫防함(예: 일본).
- 新生兒에 대한 先天性 代謝異常檢査를 義務化하고(예: 일본, 미국, 유럽선진국), 檢査費用은 醫療保險에서 적용하도록 추진함.

나. 「緊急災難診療팀(가칭)」의 設置

- 대형 災難이 발생했을 경우 事故發生地에 신속히 투입되어 醫療 및 救護活動을 총괄적으로 指揮·監督하는 「緊急災難診療팀(가칭)」을 設置·運營하여 장애발생을 최소화함.

다. 障礙人에 대한 醫療再活서비스의 支援擴大

- 障礙人에 대한 醫療保險 급여기간 365일 확대 뿐만 아니라 登錄 障礙人의 醫療費 지원을 확대함. 즉, 障礙人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醫療保險料 50% 및 障礙와 관련된 診療費의 본인부담 50%를 減免함.
- 障礙人의 醫療再活을 위해 再活病院(1995년 12개)을 확대·설치하고, 300명상 이상 綜合病院에 대한 再活醫學科 설치(현재 66%)를 의무화함(醫療法 제3조의 개정이 필요).
- 生活保護對象 障礙人에게 지급하고 있는 5種(의수족, 휠체어, 보조기, 흰지팡이, 보청기)의 補裝具를 안경, 목발, 집판·집필까지 확대함.

라. 法定 障礙人의 範疇擴大

- 國際機構(ILO, WHO 등)의 勸告에 따라, 왜소증 및 척추기형, 완치가 어려운 심장, 신장, 호흡기 등의 內部機能 障礙와 重症의 精神疾患을 法定 障礙에 포함시킴(障礙人福祉法 제2조의 改正이 필요함).

2. 障礙人의 職業再活을 통한 所得保障

가. 障礙人 生計保障을 위한 政府支援 擴大

- 生活保護對象 重症·重複障礙人(15천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生計補助手當(월 40천원)의 支給額을 年차적으로 上向調整하여 障礙人의 추가생활비(1995년 월 106천원) 수준이 되도록 함.
- 長期的으로는 家族이 障礙人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障礙人保護手當制度(가칭)」를 도입함(예: 日本, 英國, 스웨덴 등).

나. 障礙人 義務雇傭 및 職業再活 強化

- 障礙人 義務雇傭對象 事業體(300인 이상)를 중소기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참고: 日本, 63인 이상; 獨逸, 16인 이상; 프랑스, 20인 이상),
- 最低賃金(1996년, 288천원)의 60% 수준으로 규정한 義務雇傭負擔金(1996년 173천원)을 最低賃金 수준까지 上向調整함으로써 障礙人 雇傭을 촉진함.
- 障礙人에 대한 職業相談, 職業評價, 職業訓練, 就業斡旋, 事後指導 등의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障礙人 綜合職業再活센터」를 6개 大都市에 설치함.
- 廣域自治團體가 障礙人 生產品을 판매·관리하는 「專門業體(Goodwill Industry)」를 설립하고 障礙人 關聯團體도 운영에 참여토록 하여, 生產品을 공급하는 障礙人과의 連繫를 도모함.

3. 家族支援 福祉서비스의 擴大와 社會環境의 改善

가. 在家福祉 基盤의 擴充

- 障碍人을 保護·扶養하는 가족원이 就業이나 疾病 등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有料의 晝間 및 短期 保護施設을 기존의 障碍人福祉館(36개소)에 확대·설치하여 운영함.
- 障碍人을 扶養하는 家族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障碍人에 대한 추가 所得控除額을 상향조정하고(현재 540천원), 贈與稅의 감면을 추진함.
- 社會福祉館에서 실시하고 있는 家庭奉仕員 과건제도를 확대하여, 有料 家庭奉仕員 제도를 도입함(예: 일본은 장애인에 所得水準에 따라 무료 또는 시간당 200~650엔 지불).

나. 障碍人 登錄率 提高 및 便宜施設 擴充

- 障碍登錄 절차의 簡素化와 서비스 擴大를 통해 障碍登錄率을 提高하여 복지서비스의 效率性을 기함.
- 「障碍人 便宜施設 및 設備의 設置基準에 관한 規則」을 바탕으로 「障碍人 便宜施設 設置法(가칭)」을 제정하여 우선적으로 公共施設의 편의시설 설치(현재 26%)를 義務化하고 점차로 民間施設에도 확대함.

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가칭)」 展開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가칭)」을 展開하여, 障碍人과 非障碍人이 함께 하는 地域福祉共同體를 이룩함(예: 일본의 ‘살기 좋은 복지지역사회 가꾸기 운동’).

參 考 文 獻

統計廳, 『將來人口推計』, 1991.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년도 全國 心身障礙者 實態調查報告』, 1985.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년도 障礙人 實態調查報告』, 1990.

—————, 『1995년도 障礙人 實態調查』, 1995.

—————, 『障礙人福祉의 現況과 政策課題』, 1994.

厚生省, 『厚生白書』, 1995.

手塚直樹, 『障害者福祉論』, 東京: 光生館, 1995.

Chamie, M., “Survey Design Strategies for the Study of Disability,”
World Health Statistics Quarterly, Vol.42, 1989.

U. N., *Disability Statistics Database: Technical Manual*, 1992.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80.